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자문위원회 기능 중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관한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 법령을 근거로 한 관련 내용 삭제(제3조제2호,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나. 설계자문 대상 공사의 발주처 범위 확대(안 제3조제6호)
- 다. 서면심의제도 도입 (안 제6조제3항)
- 라. 사전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7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분야”를 “해당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기술분야”를 “해당기술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분야”를 “해당분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한”을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 제3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으로, “기술,공법”을 “기술, 공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

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에서 시행하는”을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5인 이상 15인”을 “5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거친것”을 “거친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6조 내지 제12조”를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정 할때”를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사전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술연구

기관 등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중 “갓춘자로”를 “갓춘 사람으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원안채택”이라 함은”을 ““원안채택”이란”으로, “원안채택”을 각각 “원안을 그대로 채택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건부 채택”이라 함은”을 ““조건부채택”이란”으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심의”라 함은”을 ““재심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반영 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5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 중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 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미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따라 ----- ----- ----- -----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 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7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 3. (생략) 4. <u>당해분야</u>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미시장(이하 “시장”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해당분야</u>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기술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제3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
로 임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따
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
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5. -----
- 해당기술분야-----

--

6. 해당분야 -----

----- 있는 사
람

7.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 있는 사
람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

-----.

제3조(위원회의 기능) -----
---- 각 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4조제6항-----
----- 기술, 공법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단서, 제9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6.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시에서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30억(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8.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 관
한 사항

5. -----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6.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

7. -----

따른 -----

8. 그 밖에 -----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② (생 략)

<신 설>

제7조(자문요청) ①관계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5조(임기) ①-----
-----, -

해당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임자 임기--
-----.

제6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
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요청) ①-----

-----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
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4. ~ 7. (생략)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
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
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8조(소위원회등) ① (생략)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소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

3. -----
----- 해당연-----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②-----
----- 별지 제2호
서식-----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위원회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5명 이상 1
5명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친것으로 본다.

⑥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내
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전심의) ① (생략)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할때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
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안전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을 설명
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
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거친 것-----.

⑥----- 제6조부
터 제12조까지-----
---.

제9조(사전심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 인정할 때-----

-----.

③-----

----- 제출하여야 ----.

④사전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
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및 관
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설명) -----

갖춘자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생략)

②위원회가 의결할 때에는 원안 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위원회가 일괄입찰의 실시절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 갖춘 사람으로 -----
-----.

제11조(심의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원안채택”이란 -----

----- 원안을 그대로 채택함-----

2. “조건부채택”이란 -----
-----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재심의”란 -----

<삭제>

경우에는 “설계적격” 또는 “부적격” 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설계적격”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④위원회가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때에는

<삭 제>

설계평가점수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 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 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 신공법, 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처리) ① (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

제13조(결과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반영하여
야 ----.

③ (현행과 같음)

④----- 따
른 -----

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생략)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비밀유지) -----

----- 아니 된다.

제16조(수당등) -----

-----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관 련 법 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의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⑦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13]